



산업 회보 2013년 8월 28일 – 시설 소유주 책임

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 (Board)는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제목 16, 분류 9에 따라, 시설 소유주에게 Board의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지키는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피허가자와 고객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 합니다. 규정은, 부분적으로 다음을 나타냅니다:

절: 904 (b)는 다음을 실행합니다:

시설 라인선스나 모바일 장치 라이선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, 및 그런 모든 시설 또는 모바일 장치의 담당자는, 그와 같은 시설이나 모바일 장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이나 모바일 장치가 있는 구내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으로, 건강 및 안전 법률을 실행하고 지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.

Board는 시설 구내에서 발견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설 소유주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시설 소유주와 모든 고용인, 무허가 개인, 부스 임차인 및/또는 독립 계약자의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.

또한, 고용인, 부스 임차인 및/또는 독립 계약자는 점검 도중 살롱에서의 위반 사항, 존재하는 경우,에 대해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. 이것은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제목 16, 분류 6에 의거한 것입니다.

절: 904 (c)는 다음을 실행합니다:

면허증을 가진 모든 이발사, 미용사, 미용 전문가, 매니큐어 미용사, 전기 제모 전문가, 강사 또는 견습생은 개별적으로 건강 및 안전 법률을 실행하고 지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.